

이헌재

8-3

평양국제토론회 토론회

일본에로의 조선인 강제련행과 강제로동의

실 태

1993. 11. 7-8

조선인 강제련행진상조사단 총련측 사무국장

홍 상 진

일본에로의 조선인 강제련행과 강제로동의 실태

조선인 강제련행진상조사단 총련측 사무국장

홍 상 진

조선인 강제련행진상조사단은 1972년에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와 일본의 법률가, 학자, 문화인들로 조일합동조사단으로 결성된후 지금까지 일본의 식민지통치하에서 감행된 조선인 강제련행, 강제로동에 관한 조사활동을 진행하여왔다.

① 조선인 강제련행, 강제로동이란

조선인 강제련행이란 《위안부》문제에서 볼수 있는 여성에 대한 《성적노예제》, 로무동원에 의한 《강제로동》 및 징병 등에 의한 《군무동원》으로서 그것들이 랍치, 관헌력의 랍용, 사기 등에 의해 감행된 련행형태의 총칭이라고 말할수 있다.

다음으로 강제로동이란 1930년의 국제로동기구의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에 위반되는 로동의 실태이다.

그리고 《노예조약》(1926년)의 정의에서는 《노예제도》란 《그 사람에게 대하여 소유권에 따라 일부 또는 전체 권능이 행사되는 개인의 지위 또는 상태를 말한다》

고 되어 있는데 조선인의 강제련행, 강제로동은 마땅히 《노예류사행위》에 해당된다.

1993년 8월 25일 유엔인권위원회 소수민족 차별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는 《내전을 포함한 전시의 조직적강간, 성적노예제 및 노예류사행위》에 관하여 특별보고자를 임명하고 이러한 《사실, 법적분석, 결론 및 권고》를 포함한 조사를 진행할것을 결정 (E/CN.4/SUB.2/1993/L.12/REV.1) 하였다.

이렇게 본다면 일본에 의한 조선식민지통치하에서의 조선국내에서의 강제적인 노동, 일본 등 국외에서의 노동은 모두 《노예류사행위》로 인정되는것이며 그 대상으로 되는 시기는 일본에 의한 1938년의 국가총동원법시행이전을 포함한 전쟁전, 전쟁중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20세기에는 여러가지 잔인한 행위들이 있었지만 민간인까지 관헌과 협동하여 600만명이나 되는 타민족에게 강제로동을 강요하고 폭행을 가하며 학살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방후 오늘까지 사죄조차 하지 않고있는 실례는 찾아볼수 없다.

② 노예사냥에 의한 련행

일본 정부는 이때까지 조선인 강제련행에 관한 자료는 없다고 하고 있었지만 국제적인 비판앞에서 1990년 8월, 일본로동성 서고에 명단이 보관되어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였다.

이 명단은 1946년에 후생성이 조선인 강제련행자들에 대한 조사를 도도부현별로 진행하여 집계한 것이다. 명단총수 66,941명중 《모집》 7,217명, 《관헌알선》 및 《징용》 49,182명, 불명확한것이 10,542명이다.

강제련행의 총수에 미루어보면 불충분한 수자이고 도도부현별 수자도 상당히 차이가 있지만 현시점에서는 이외에 그 실례를 보여주는 통계자료가 공개되어있지 않다.

그래서 도도부현중에서 제일 명단수가 많은 효고현안의 122개소의 13,430명분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효고현에 끌려간 강제련행수는 25,000명부터 38,000명이라고 되어있고 약 35%부터 50%정도의 통계라고 말할수 있다.

효고현으로 련행된 입소경로별 (표1)에서는 《징용》이 52.1%로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관헌알선》이 27.5%

인데 《관현알선 및 징용》이라는 기재가 7.7%이므로

《모집》, 《관현알선》과 《징용》의 합계는 98%로 된다.

《관현알선》과 《징용》이 많이 표기되어있는데 그 리유로 생각되는것은 《모집》을 강제련행으로 인정하지 않는 조사방법의 문제점과 효고현에서는 《관현알선》, 《징용》에 의해 군수공장에 집중적으로 련행된 사실을 고려해야 할것이다.

그리고 이 조사에는 강제련행자들의 퇴소리유가 명기되어있다. (표 2)

13,430명중 1945년 8월 15일까지 강제로동을 강요당한 노동자가 6,155명으로서 45.8%가 된다.

나머지 7,275명중 《도망, 사망, 행방불명》자는 4,767명으로서 전체의 35.5%가 된다. 이 《도망, 사망, 행방불명》수는 강제로동이 얼마나 가혹한 노예로동인가를 보여주는것인데 이 수자조차 《특고월보》 등 다른 자료들에 대비해보면 적게 보고되어있는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하여 2년 혹은 3년의 《만기》로 끝마쳤다고 되어있는것은 불과 5.9%이다.

그중에는 중병, 신체부상 등으로 돌려보낸 노동자도 포함 되어있을것이다.

이 명단작성의 배경은 일본을 점령한 연합국의 요망에 따른것으로 추정되는데 일본정부가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을 정확히 종합하였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한정된 자료조차도 조선인노동자들에게 가해진 노동이 얼마나 가혹하였는가를 보여주고있는것이다.

이 명단에 이름이 기록되어있고 평양에 살고있는 백제인은 150명의 조선인들과 함께 미쯔비시 메이엔광산에 련행되었다.

《도망치다가 붙잡힌 조선인노동자를 천정에 거꾸로 매달운채 목도와 채찍으로 때렸다. 기절하면 주전자의 물을 코에 부어넣고 또 때렸다》고 공개고문의 잔인성에 대해 말하고있다.

다음으로 최근에 조사단이 발견한 자료에서 나온 련행 형태에 대하여 보자. 이 자료는 1991년 조사단이 도표의 고마자와 대학에서 발견한 《반도로무자 이입에 관한 서류》(나이가이제강소작성, 도표도 표포구)에 포함되어있었다. 도표도 표포구의 나이가이제강소는 철강통제회의 알선에 따라 일본의 후생성, 경시청 그리고 조선총독부의 허가를 받아 1944년 2월 18일 함경도의 함흥에 로무담당자를 파견하였다. 도청의 지시에 따라 함흥, 원산, 함주

등 9개군에서 17살-19살의 95명을 3월 12일 함흥도청에 모이게 하고 훈련을 위하여 겸이또훈련소에 보내며 4월 15일에 일본으로 련행했다. 그러나 련행지는 전염병발진티브스가 류행되고있으므로 충분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고 도방역과에서 지적을 받았던것이다. 하지만 억지로 련행했기때문에 도표의 나이가이제강소합숙에서 전염병발진티브스가 만연되었던것이였다.

이 기업이 경시청에 제출한 보고에 의하면 1944년 5월 1일부터 81명의 로동자가 병원에 격리되어있었다고 한다.

이처럼 조선인강제련행은 단지 한 기업이 감행한 행위가 아니라 후생성, 경시청 그리고 조선총독부, 각 도청, 군 등에 이르는 일본제국의 국가권력이 앞선추진하고 강제적으로 감행한것이다. 그 결과 노예사냥과 똑같은 방법으로 전염병환자들까지 두차별적으로 련행하였던것이다.

③ 강제로동

조선인에 대한 로무판리는 전쟁수단을 위한 살인적《생산확대》방침에 따라 진행되었으며 련행자들이 증가됨에 따라 내각회의결정에 의하여 담당경찰서원이 대폭 증강되였다.

이 사실은 조선인들의 도주와 반항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와 기업이 하나로 되어 감행하였다는것을 증명하고있다.

그 결과 일본이 스스로 비준한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의 대다수 항목에 위반되는 행위가 공공연히 감행된 것이다.

조약에서는 노동기간은 《1년에 60일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되어있으나 600만련행자중 60일 이내의 노동기간이 지켜진 경우는 전혀 없을것이다. 노동기간은 최저 2년이 강요되었고 이것조차 강제적으로 연장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조약에서는 탄광, 광산에서의 지하로동이 금지 되어있었으나 일본에 련행된 조선인로동자의 약 60%가 탄광, 광산에서 지하로동을 하였다.

후가이노 비바이에 있는 미쯔비시 비바이탄광에서 일한 일본인 아시노 기이찌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있다.

《내가 일하던 수직갱에서만도 300명 정도의 조선사람들이 일하고있었습니다.

조선사람들은 우리 일본사람들과는 달리 하루 과제를 다할때까지 몇시간이고 혹사당하고있었습니다.

간부가 곤봉을 들고 감독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사람들의 3 배는 일시켰을 것입니다. 자주 우리보고 물을 달라고 하였는데 감독에게 곤봉으로 얻어맞는 것이 불쌍해서 물을 주지 못했습니다. 말을 걸기만 해도 때렸습니다.

그리고 웬간한 정도로 앓아가지고는 의사에게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몸이 허약한 늙은이는 결국 죽을수밖에 다른 수가 없었습니다. » (1973년 4월 조사단 후가이도지역의 현지조사에서 증언수집)

다음으로 조약에는 《위생 및 숙박에 관한 모든 조치를 엄격히 실시하며》(제16조 2) 음식, 기후, 휴식 등 구체적으로 노동자들의 건강보장조치가 명시되어있으나 이것들은 일체 무시되었다.

도찌기현 아시오광업소에는 1940년부터 조선사람들이 약 1,000명 련행되었는데 락반사고와 규폐병때문에 사망자가 났을뿐아니라 학살까지 감행되었다. 식량이 적어져서 《썩은 감자를 주어먹었다》《그 때문에 영양실조로 넘어지는 사람들이 많았고 무우처럼 발이 팽팽한 시체가 손수레로 자주 운반되었다》《병때문에 취업할수 없는 노동자를 전주대에 매달아놓고 때리는 등 처참한

풍경이 펼쳐졌다》라고 《아시오동광산로동운동사》에 기록되어있다. (아시오동광산로동조합편 《아시오동광산로동운동사》

1958년 및 동속기록)

특히 전쟁말기에는 더욱 가혹한 로동을 강요당하였다.

미야기현 다가조 해군공창건설공사에는 해군군속으로서 징용된 약 1,000명의 조선인들이 련행되었다. 여기서는 비밀공사라는 이유로 《합바》마다 아끼다개가 매여져있었고. 련행자들은 긴 목침을 베고 자곤 했다.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 조선인 사망자들은 저녁이 되면 마차로 밭에 운반되어 매장되었다. 더우기 다리의 뼈아에는 조선인 로동자들이 사람기둥으로서 콘크리트속에 처박혔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일본 정부는 이것을 확인하며 추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제2차대전말기 나가노현 마쓰시로에 일본천황이 피난할 10여키로메터에 달하는 거대한 지하방공호가 건설되었다.

이 공사에 수천명의 조선사람들이 련행되었는데 공사가 끝난후에는 비밀보장을 위하여 수백명이 학살되었다고 한다.

조사단은 이러한 련행작업소에 대한 조사를 하고있는데 그 수는 일본국내만해도 1,141개소 이상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가혹한 노예로동과 학대에 의한 사상자들

의 정확한 통계수자를 일본정부는 발표하지 않았지만 일본국내만해도 30만명으로 추산되어있다. 그리고 아직까지 유가족들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고있다.

다음으로 조약에는 임금차별을 없애며 지불은 현금으로 한다고 되어있으나 일본인들의 절반도 안되는 임금조차 도망방지 위해 강제예금을 강요당했다. 이러한 임금은 해방후 본인에게 지불해야 하였지만 이 의무조차 태공함으로써 현재 공탁 등으로 일본이 보관하고있는데 이것은 보상이전의 문제이다.

이처럼 본인의 의사와 어긋나는 로동계약, 차별임금과 강제예금에 의한 미지불임금, 안전대책이 없는 작업소에서 사고, 짐승같은 위생설비와 수용시설 그리고 이러한 로동이 녀자 및 아동들에게까지 미친것이다. 바로 폭행과 협박 그리고 감금이 감행되고 폭행에 의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가해진것이다.

조선인강제런행에 의한 로동은 《강제로동에 관한 조약》의 대다수 조례에 위반되는 노예로동이다. 이 조약에는 《강제로동의 불법적인 강요는 형사처벌》이라고 명기되어있다. 응당 이러한 행위들에 대한 처벌이 진행되어야 한다.

④ 문제점과 위법성

다음으로 조선인강제련행은 제2차 세계대전후 독일의 전쟁범죄를 재판한 뉴른베르그군사재판, 일본의 범죄를 재판한 극동군사재판의 《인도에 대한 죄》에 해당된다.

이미 연합국은 1946년 11월 20일의 《조선인의 지위 및 취급에 관한 총사령부 외사국 발표》에서 《사실상 노예적로동자였던 사람들을 해방하기 위하여 신속히 조치가 취해졌다》고 일본에서의 조선인강제련행, 강제로동이 노예적로동이었다고 지적하였다. 따라서 마땅히 이러한 문제가 인도에 대한 죄로써 판결되어야 하였었다.

뉴른베르그군사재판 및 계속재판판결에서는 나치스에 의한 강제로동은 《인도에 대한 죄》로 처벌되었다. 다른 민족에 대한 강제로동계획에 관여한 죄로 미힐공군원수는 종신�형, 화르벤기업의 역원 13명에게는 형사처벌 약 7만 명의 외국인강제로동자들로 군사무기를 생산한 기업 그룹에서 11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그러나 1946년 5월부터 도쿄에서 진행된 극동군사재판에서는 아세아에 대한 일본군의 전쟁범죄를 원만히 추궁하지 않았다.

그후 오늘까지 일본정부는 조선에 대한 식민지통치는

물론이고 조선민족에 대한 전쟁책임을 사죄하고 배상, 보상하는 일도 하지 않았다.

현재 일본정부는 조선인 강제련행, 《위안부》 문제는 일본의 식민지당시의 법률에 의해 《합법》적이며 《적법》적으로 진행되었으므로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하고있다.

일본정부는 가해의 역사를 더 되풀이하지 말고 조선인 강제련행, 강제로동을 전쟁범죄로 인정하여 그 책임을 명확히 밝히며 전면적인 조사를 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표 1) 효고현분의 내역 (입소경로별)

모집, 기타	1, 4 0 7	1 0.5%
관 헌 알 선	3, 6 9 8	2 7.5%
징 용	6, 9 9 5	5 2.1%
관헌알선 및 징용	1, 0 3 4	7.7%
자세히 모르거나 기록없는것	2 9 5	2.2%
정 신 대	1	0.0%
합 계	1 3, 4 3 0	1 0 0.0%

(표 2)

(퇴소사유별)

패전에 의한것	6, 1 5 5	4 5.8%
도망, 행방 불명, 사망	4, 7 6 7	3 5.5%
도·중 귀 국	1 2 7	0.9%
병, 도중 송환	3 5 2	2.6%
직무이동, 도중퇴직	3 0 2	2.2%
군 대 입 대	6 3	0.5%
만 기	7 9 6	5.9%
해고, 기타	3 3 1	2.5%
자세히 모르거나 기록없는것	5 3 7	4.0%
합 계	1 3, 4 3 0	1 0 0.0%